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실무 매뉴얼

發 刊 辭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이 2016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상대국에 약속한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법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에 있어서 통일된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왔습니다.

그 결과, 2016년 7월 현재 120명의 외국법자문사와 26개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이후에는 더욱 많은 외국 변호사 및 로펌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은 국내·외 로펌이 우리나라에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여 국내법과 외국법이 혼재된 사건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위한 요건과 절차는 국내·외 로펌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

하여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려는 당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본 실무 매뉴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매뉴얼에는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관련 예상되는 문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립인가 심사 요건,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담았습니다.

본 매뉴얼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려는 국내·외 다양한 분들
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본 매뉴얼의 기획, 집필을 위해
수고한 국제법무과 관계자들에게도 아낌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2016. 8.

법무부 법무실장 김호권

contents

차례

I 신청절차 일반 / 1

- A.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 3
 - 1.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 3
 - 2.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반 6
- B. 합작법무법인 정관변경 절차 9
 - 1. 합작법무법인 정관변경 절차 9
 - 2. 정관변경 인가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반 11
- C. 합작법무법인 등기 절차 13
 - 1. 합작법무법인 등기 절차 13
 - 2. 합작법무법인 설립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반 15
- D.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갱신 절차 16
 - 1.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갱신 절차 16
 - 2.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갱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반 .. 18

II 관련 문제들 / 21

- A.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일반 23
 - 1. 합작참여자의 자격 판단 기준 23

2. 예비심사절차	24
3.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처	25
4.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 서류	26
5.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효력 발생일	29
6.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갱신 신청 시 필요 서류	30
7.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갱신 시 신규 인가증 발급 여부	34
B.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주체	35
1. 합작참여자 자격 관련	35
2. 외국 합작참여자의 법적형태	37
3. 합작법무법인 설립 이후 합작참여자의 존속 여부	39
C. 합작법무법인 운영 등	40
1. 합작법무법인 법적형태 관련	40
2. 합작법무법인 대표 수 관련	41
3. 합작법무법인 대표 원자격국 제한 관련	42
4. 합작법무법인 정관 작성 관련	43
5. 합작법무법인 명칭 관련	44
6. 합작법무법인 등기 관련	45
7. 합작법무법인 합작참여자 변경 관련	46
8. 합작법무법인 소속 직원의 겸직 관련	49
9. 합작법무법인 고용 관련	50
10. 합작법무법인 운영 관련	52
11. 합작법무법인 수임제한 관련	53
12. 합작법무법인 업무범위 관련	54
13. 합작법무법인 퇴임 변호사 ·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제한	55

III 참고서식 / 57

1.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예비심사 신청서	59
2.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정식심사 신청서	61
3. 설립인가 신청 합작참여자 대표의 진술서	63
4.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70
5. 정관변경 이유서	71
6. 정관 변경 안	72
7. 신구조문 대비표	73
8.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갱신신청서	74

IV 참고법령 / 77

1. 외국법자문사법	79
2.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120

I

신청절차 일반

A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

1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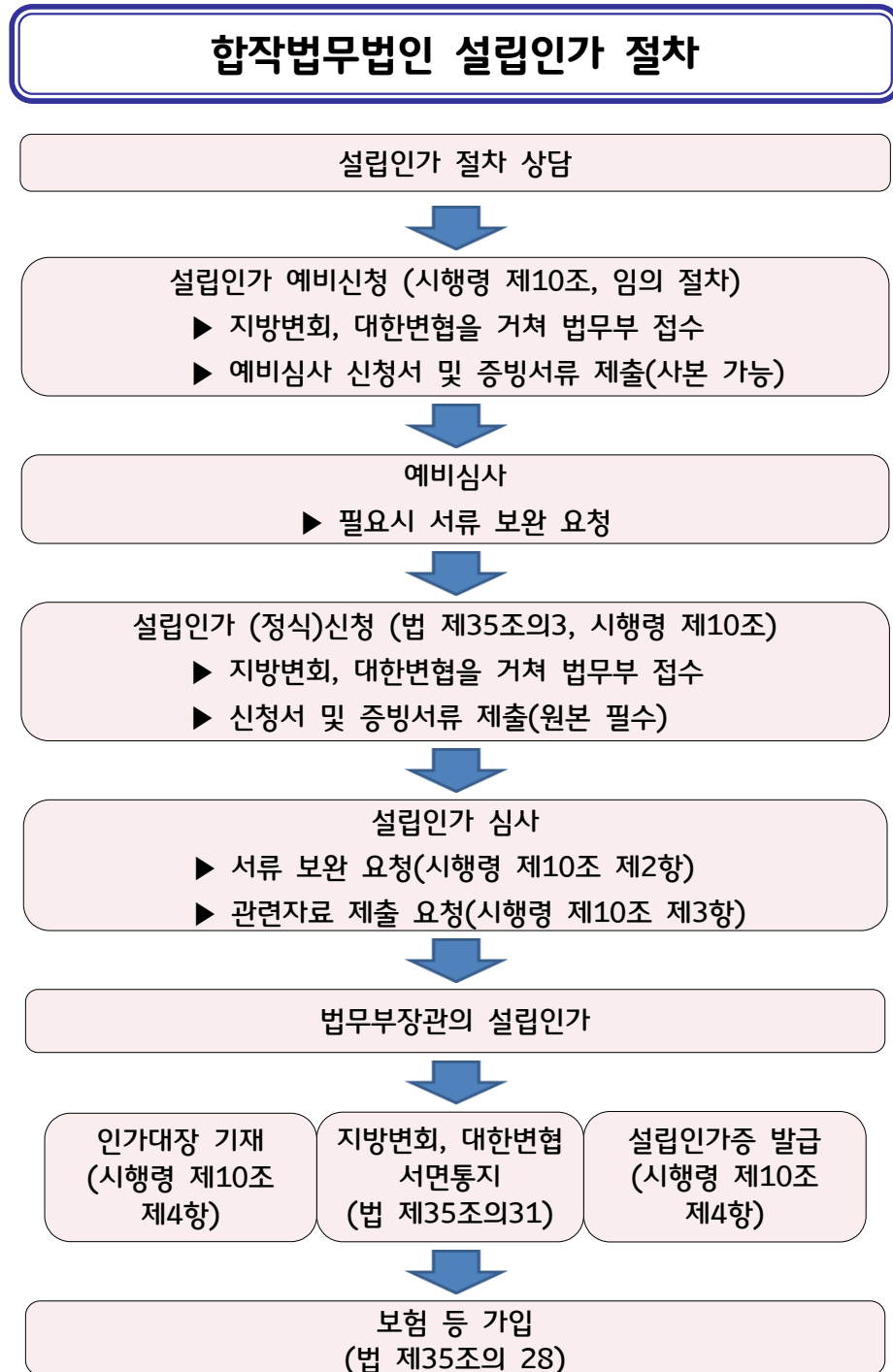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사항

-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법무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까지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법무부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심사 절차는 예비심사와 정식심사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예비심사 과정은 향후 정식심사의 원만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신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임의적 사전심사 절차입니다.
-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은 합작참여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나, 대리인에 의한 방문접수, 우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의 경우 원본서류 외 개별 항목별로 분리된 스캔파일(PDF)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정식심사가 통과되면 교부받은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법원 등기소에서 일반 등기절차를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설립인가가 되면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변호사회에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 절차 개요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3(설립 신청 등) ①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합작참여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또는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합작참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유효기간은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설립인가의 갱신 신청은 제3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0개월 전부터 5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5(등기) ①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4.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
5. 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합작법무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2016.3.2.]

2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반

■ 문의사항

-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 답변사항

-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명시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목록	제출서류
1	신청서	• 예비·정식심사 신청서 양식 활용
2	정관	-
3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 예) 양 당사자간 MOU, 계약서 등
4	각 합작참여자가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국 변호사 단체 또는 해당지역 법원 등에서 발급받은 설립인가일과 현재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각 합작참여자에 법조 경력 5년 이상 5인 이상 변호사가 존재하고, 3인 이상이 해당 합작 참여자의 구성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① 합작참여자 대표의 진술서 - 합작참여 로펌의 구성,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수에 대한 진술 - 그 중 3인 이상이 합작 참여자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취지 ※ 7항 대표의 진술서에 포함하여 기재 ② 국내·외 변호사 각 5인에 대한 재직증명서(직무경력 5년 확인 용도, 현재 재직 중인 합작참여 로펌에서 발급받은 것은 반드시 포함)
6	각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의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양 당사자 명의의 확인서

	서류 목록	제출서류
7	설립인가 신청 합작참여자 대표의 진술서	• 개별 합작참여자별로 작성 • 합작참여 로펌의 구성,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수에 대한 진술 • 그 중 3인 이상이 합작 참여자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취지 • 각 합작참여자의 전문성 확인 내용 포함
8	각 합작참여자가 최근 5년간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개별 준비, 필요한 경우 법무부 협조
9	각 합작참여자의 대표가 최근 5년간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률에 따른 징계, 형사 처벌 상응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개별 준비, 필요한 경우 법무부 협조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시행령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35조의8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의 참고 서류

[본조신설 2016.6.28.]

■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양식

- 참고서식 59, 61 페이지의 <붙임 1>, <붙임 2>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대한변협 홈페이지 등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B 합작법무법인 정관변경 절차

1 합작법무법인 정관변경 절차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 정관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사항

-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는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을 거쳐 법무부에 정식 접수됩니다.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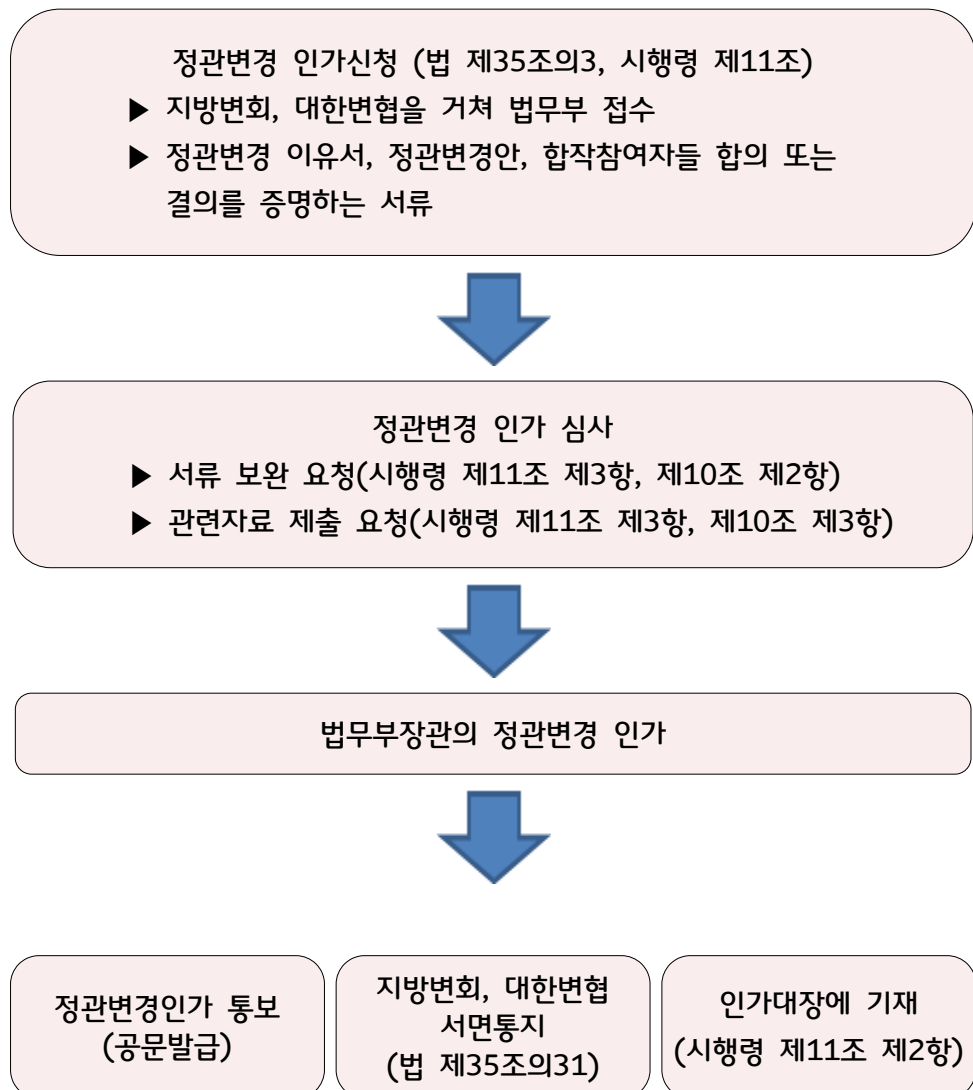
제35조의3(설립 신청 등) ①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합작참여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또는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합작참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 절차 개요

합작법무법인 정관변경 인가 절차



2 정관변경 인가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반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 정관변경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 답변사항

-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명시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목록	제출서류
1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 신청서 서식 활용
2	정관변경 이유서	
3	정관변경안	
4	정관변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 합작참여자 회의 의사록
5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6	최종정관(안)	
7	합작법무법인 등기부등본	
8	기타 필요한 서류	• 정관변경 취지를 입증하는 서류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시행령

제11조(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① 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합작참여자는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6.6.28.]

■ **합작법무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 참고서식 70, 71, 72, 73 페이지의 <붙임 4>,<붙임 5>,<붙임 6>,<붙임 7>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대한변협 홈페이지 등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C 합작법무법인 등기 절차

1 합작법무법인 등기 절차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사항

-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서, 정관, 설립인가증 등을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작법무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합작참여자 공동 명의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5(등기) ①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합작법무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2016.3.2.]

■ 절차 개요

합작법무법인 설립등기 절차

설립인가



설립등기 신청 (법 제35조의5, 시행령 제13조)

- ▶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시행령 제13조 제1항)
- ▶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설립등기 의무(법 제35조의5)
- ▶ 합작참여자 모두의 명의로 공동신청(시행령 제13조 제2항)
- ▶ 정관, 설립인가증 첨부(시행령 제13조 제2항)



등기 경로



등기경로 후 7일 이내 설립등기 보고서 법무부에 제출
(시행령 제13조 제4항)



법무부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시행령 제13조 제4항)

※ 등기 관련하여 그 외 사항은 상업등기법을 준용

2 합작법무법인 설립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반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 설립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 답변사항

-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명시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목록	제출서류
1	등기신청서	• 법원 등기소 서식 활용
2	정관	
3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시행령

제13조(합작법무법인의 등기) ② 합작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합작참여자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

[본조신설 2016.6.28.]

D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갱신 절차

1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갱신 절차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갱신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사항

-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가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 인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0개월 전부터 5개월 전까지 설립인가 갱신 신청서에 합작참여자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3(설립 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유효기간은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일부터 5년으로 한다.

- ④ 설립인가의 갱신 신청은 제3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0개월 전부터 5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외국법자문사법시행령

제12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 ①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 갱신신청서에 제10조제1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8.]

절차 개요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갱신신청 절차

설립인가 갱신 신청 필요

- ▶ 인가의 유효기간은 설립인가일로부터 5년
- ▶ 유효기간 말일 10개월 전부터 5개월 전 사이 신청 가능



설립인가 갱신신청 (법 제35조의3, 시행령 제12조)

- ▶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변회, 대한변협을 거쳐 법무부 접수
- ▶ 설립인가 갱신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 갱신



인가갱신 통보
(공문발급)

지방변회, 대한변협에
서면통지
(법 제35조의31)

인가대장에 기재
(시행령 제12조 제2항)

2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갱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반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갱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 답변사항

-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목록	제출서류
1	설립인가 갱신신청서	• 신청서 서식 활용
2	각 합작참여자가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국 변호사 단체 또는 해당지역 법원 등에서 발급받은 설립인가 일과 현재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각 합작참여자에 법조 경력 5년 이상 5인 이상 변호사가 존재하고, 3인 이상이 해당 합작 참여자의 구성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① 합작참여자 대표의 진술서 - 합작참여 로펌의 구성,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수에 대한 진술 - 그 중 3인 이상이 합작 참여자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취지 ※ 7항 대표의 진술서에 포함하여 기재 ② 국내·외 변호사 각 5인에 대한 재직증명서(직무경력 5년 확인 용도, 현재 재직 중인 합작참여 로펌에서 발급받은 것은 반드시 포함)

	서류 목록	제출서류
4	설립인가 신청 합작참여자 대표의 진술서	• 개별 합작참여자별로 작성 • 합작참여 로펌의 구성,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수에 대한 진술 • 그 중 3인 이상이 합작 참여자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취지 • 각 합작참여자의 전문성 확인 내용 포함
5	각 합작참여자가 최근 5년간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개별 준비, 필요한 경우 법무부 협조
6	각 합작참여자의 대표가 최근 5년간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법률에 따른 징계, 형사처벌 상응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개별 준비, 필요한 경우 법무부 협조

■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갱신신청서

- 참고서식 74페이지의 <붙임 8>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대한변협 홈페이지 등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관련 문제들

A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일반**

1 **합작참여자의 자격 판단 기준**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시 외국 합작참여자가 세계 여러 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자유무역협정 당사국인지를 판단하는가요.

■ **답변사항**

-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려는 외국 합작참여자의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 소재지 국가, 즉 최고 의사결정기구(Headquarter)가 소재한 곳을 기준으로 자유무역협정당사국인지를 판단합니다(법 제35조의2 제2항).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설립) ①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와 합작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외국 합작참여자가 여러 나라에 걸쳐 사무소, 현지 사무소, 현지 법인, 지사, 분사무소 등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 소재지 국가를 기준으로 제1항의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을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

2 예비심사절차

■ 문의사항

- 설립인가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식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사항

- 예비심사는 법에서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된 절차가 아니고 신청인의 편의와 행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마련된 임의적인 절차이므로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식심사를 신청하는 것도 법상 가능합니다.
- 그러나 예비심사 신청 없이 정식심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제출 미비를 이유로 반려 받은 후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반복함으로써 오히려 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보다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처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합작법무법인 사무소 이전·분사무소 개설 등 관련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사항

-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등은 합작법무법인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지방 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경유하여 법무부로 전달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무부 홈페이지, 대한변협 홈페이지,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모두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3(설립 신청 등) ①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합작참여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15(사무소) ② 합작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4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 서류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한 증명서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사항

-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목록	제출서류
1	신청서	• 예비·정식심사 신청서 양식 활용
2	정관	-
3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 예) 양 당사자간 MOU, 계약서 등
4	각 합작참여자가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국 변호사 단체 또는 해당지역 법원 등에서 발급받은 설립인가일과 현재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각 합작참여자에 법조 경력 5년 이상 5인 이상 변호사가 존재하고, 3인 이상이 해당 합작 참여자의 구성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① 합작참여자 대표의 진술서 - 합작참여 로펌의 구성,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수에 대한 진술 - 그 중 3인 이상이 합작 참여자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취지

	서류 목록	제출서류
		※ 7항 대표의 진술서에 포함하여 기재 ② 국내·외 변호사 각 5인에 대한 재직 증명서(직무경력 5년 확인 용도, 현재 재직중인 합작참여 로펌에서 발급 받은 것은 반드시 포함)
6	각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의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양 당사자 명의의 확인서
7	설립인가 신청 합작참여자 대표의 진술서	• 개별 합작참여자별로 작성 • 합작참여 로펌의 구성,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수에 대한 진술 • 그 중 3인 이상이 합작 참여자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취지 • 각 합작참여자의 전문성 확인 내용 포함
8	각 합작참여자가 최근 5년간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개별 준비, 필요한 경우 법무부 협조
9	각 합작참여자의 대표가 최근 5년간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률에 따른 징계, 형사처벌 상응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개별 준비, 필요한 경우 법무부 협조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시행령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35조의3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의 참고 서류

[본조신설 2016.6.28.]

5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효력 발생일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유효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 답변사항

-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유효기간 5년은 설립인가중에 기재된 설립인가일 부터 기산합니다.
- 예를 들어 2017. 1. 2. 설립인가를 받고, 2017. 1. 16. 등기를 완료한 경우, 설립인가는 2022. 1. 2.까지 유효합니다.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3(설립 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유효기간은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 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설립인가의 갱신 신청은 제3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0개월 전부터 5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5(등기) ② 합작법무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

[본조신설 2016.3.2.]

6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갱신 신청 시 필요 서류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갱신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답변사항

- 설립인가 갱신 신청 시에는 설립인가 신청 시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갱신 신청 시를 기준으로 법 제35조의8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설립인가 신청서가 아닌 설립인가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갱신신청서는 합작참여자 공동 명의가 아닌 합작법무법인 명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목록	제출서류
1	설립인가 갱신신청서	• 신청서 서식 활용
2	각 합작참여자가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국 변호사 단체 또는 해당지역 법원 등에서 발급받은 설립인가일과 현재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각 합작참여자에 법조 경력 5년 이상 5인 이상 변호사가 존재하고, 3인 이상이 해당 합작 참여자의 구성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① 합작참여자 대표의 진술서 - 합작참여 로펌의 구성,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수에 대한 진술 - 그 중 3인 이상이 합작 참여자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취지 ※ 7항 대표의 진술서에 포함하여 기재

	서류 목록	제출서류
		② 국내·외 변호사 각 5인에 대한 재직증명서(직무경력 5년 확인 용도, 현재 재직 중인 합작참여 로펌에서 발급받은 것은 반드시 포함)
4	설립인가 신청 합작참여자 대표의 진술서	• 개별 합작참여자별로 작성 • 합작참여 로펌의 구성,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수에 대한 진술 • 그 중 3인 이상이 합작 참여자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취지 • 각 합작참여자의 전문성 확인 내용 포함
5	각 합작참여자가 최근 5년간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개별 준비, 필요한 경우 법무부 협조
6	각 합작참여자의 대표가 최근 5년간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률에 따른 징계, 형사처벌 상응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개별 준비, 필요한 경우 법무부 협조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3(설립 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유효기간은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설립인가의 갱신 신청은 제3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0개월 전부터 5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8(합작참여자) ①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국내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2.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5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이들 중 최소 3명은 해당 국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3. 주사무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되었을 것
 - 가. 최근 5년간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최근 5년간 그 대표가 국내 합작참여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를 받은 경우로서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국내 합작참여자의 인적 구성, 업무사례,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합작법무법인 사무 취급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외국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2.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5명 이상의 외국변호사를 보유하고, 이들 중 최소 3명은 해당 외국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3. 제35조의2제2항의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되었을 것
 - 가. 최근 5년간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최근 5년간 그 대표가 외국 합작참여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외국 합작참여자의 인적 구성, 업무사례,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합작법무법인 사무 취급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본조신설 2016.3.2.]

외국법자문사법시행령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35조의3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6.6.28.]

제12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 ①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 갱신신청서에 제10조제1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8.]

7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갱신 시 신규 인가증 발급 여부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갱신 시 새로운 인가증이 발급되는지와 기존 등기에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 답변사항

- 설립인가 갱신 시 새로운 인가증이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인가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취지의 법무부 공문이 발급됩니다. 이때 설립인가 연월일은 등기사항이므로, 인가 기간이 갱신되었다는 취지가 등기되도록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5(등기) ①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4.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
5. 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합작법무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2016.3.2.]

B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주체

1 합작참여자 자격 관련

■ 문의사항

- 모든 국가의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의 합작참여자가 대한민국에서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가요.

■ 답변사항

- 대한민국의 법률시장 개방은 FTA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 합작참여자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3단계로 법률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국가에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무소나 법인에 국한됩니다(법 제35조의2 제1항, 제35조의 12).
- 2016년 7월 기준 대한민국이 FTA에서 법률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3단계 개방 국가의 합작참여자만 국내 합작참여자와 함께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발효(최초 개방시점)
1단계[발효 즉시]	• EFTA('06.9.1.), 인도('10.1.1.), 중국('15.12.20.)
2단계[최초 개방 시점부터 2년 후]	• ASEAN('09.5.1.), 페루('11.8.1.), 뉴질랜드('15.12.20.)
3단계[최초 개방 시점부터 5년 후]	• EU('11.7.1.), 미국('12.3.15.), 호주('14.12.12.), 캐나다('15.1.1.), 콜롬비아('16.7.15.) ※ 베트남(한·ASEAN FTA에 따라 현재 2단계 개방, 한·베트남 FTA에 따라 '18. 12. 20. 3단계 개방)

※ 법률시장 단계별 개방 : 1단계는 외국 변호사·로펌의 국내진출 및 원자격 국법 자문 등 허용, 2단계는 국내로펌과 사안별 업무제휴 허용, 3단계는 국내로펌과 합작 회사 설립을 통한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 이에 의하면 현재(2016. 7.) EU, 미국, 베트남,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의 외국 합작참여자만이 3단계 개방 시기 도래 시 국내 합작참여자와 함께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설립) ①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와 합작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외국 합작참여자가 여러 나라에 걸쳐 사무소, 현지 사무소, 현지 법인, 지사, 분사무소 등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 소재지 국가를 기준으로 제1항의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을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

2 외국 합작참여자의 법적형태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려는 외국 합작참여자(외국로펌) 본점 사무소의 법적형태에 제한이 있는가요.

■ 답변사항

- 「외국법자문사법」은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원자격국에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가 국내 합작참여자와 함께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의하면 법률사무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로펌이라면, PC(Professional Corporation)이든,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형태 이든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법 제35조의29, 제35조의10 등에서는 대한민국에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도 합작참여자의 본점사무소가 현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에 사실상 사무소 전체가 이전되는 형태로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관련 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0(합작참여자의 탈퇴) ① 합작참여자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국내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해산한 경우
2. 「변호사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3.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외국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법에 따라 해산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29(인가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합작참여자가 제35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조신설 2016.3.2.]

3 합작법무법인 설립 이후 합작참여자의 존속 여부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국내·외국 합작참여자는 합작 이후에도 별도의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가요.

■ 답변사항

- 합작참여자가 해산하는 경우를 당연 탈퇴사유로 두고 있는 「외국법자문사법」의 취지상 합작법무법인의 국내·외국 합작참여자는 모두 존속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 합작참여자의 경우 합작법무법인과 별도로 변호사법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이 법 제35조의2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0(합작참여자의 탈퇴)

- ② 국내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해산한 경우

- ③ 외국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법에 따라 해산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23(국내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 국내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과 별도로 「변호사법」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C 합작법무법인 운영 등

1 합작법무법인 법적형태 관련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때 그 법적형태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요.

■ 답변사항

-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합작법무법인은 ‘법무법인’의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설립) ①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와 합작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2 합작법무법인 대표 수 관련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에 복수의 대표가 존재할 수 있나요.

■ 답변사항

- 합작법무법인의 대표는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 중 선임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대표 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3(대표) 합작법무법인의 대표는 합작참여자 회의(합작참여자를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된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일 것
2. 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 합작참여자의 소재지국일 것

[본조신설 2016.3.2.]

3 합작법무법인 대표 원자격국 제한 관련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 대표가 외국법자문사인 경우, 외국법자문사의 원자격국에 특별한 제한이 있나요.

■ 답변사항

- 합작법무법인 대표인 외국법자문사는 외국 합작참여자 본점사무소 소재지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3(대표) 합작법무법인의 대표는 합작참여자 회의(합작참여자를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된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일 것
2. 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 합작참여자의 소재지국일 것

[본조신설 2016.3.2.]

4 합작법무법인의 정관 작성 관련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의 정관 기재사항 중 하나인 합작참여자 등록번호의 경우, 외국 합작참여자도 같이 등록번호가 없으면 이에 준하는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의미인가요.

■ 답변사항

-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 합작참여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한 것은 해당 합작참여자를 다른 로펌과 혼동하지 않고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 합작참여자가 본점사무소 소재지에서 변호사협회 등에 등록할 때 부여받는 일련번호와 같이 해당 합작참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번호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4(정관기재사항)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본조신설 2016.3.2.]

5 합작법무법인 명칭 관련

■ 문의사항

- 합작참여자의 명칭 중 통용되는 약칭은 어떤 의미인가요.

■ 답변사항

- 합작참여자의 명칭 중 통용되는 약칭은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 그 로펌을 지칭하는 용어로 활용되는 명칭으로, 합작참여자의 ① 동일성을 인식하는데 무리가 없고, ② 다른 곳과 혼동할 가능성이 없는 명칭을 의미합니다.
-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통용되는 약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6(명칭) ① 합작법무법인은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통용되는 약칭을 포함한 다)을 병기하고, 그 명칭 중에 합작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6 합작법무법인 등기 관련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이후 설립 등기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가요.

■ 답변사항

- 합작법무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반드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5(등기) ①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4.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번호사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
5. 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합작법무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2016.3.2.]

7 합작법무법인 합작참여자 변경 관련

■ 문의사항

- 설립인가를 받은 합작법무법인 중 합작참여자가 탈퇴하는 등 합작참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어떤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요.

■ 답변사항

- 합작법무법인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합작참여자를 가입시키는 등 합작참여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합작참여자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 변경된 정관에 대하여 법무부로부터 재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인가 이후에는 변경 등기 절차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7(합작법무법인의 구성) ③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른 합작참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 문의사항

- 설립인가를 받은 합작법무법인에 제3의 합작참여자가 가입하는 경우 어떤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요.

■ 답변사항

- 합작법무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고 변경된 정관에 대하여 법무부로부터 별도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등기 절차도 필요합니다.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9(합작참여자의 가입) ① 합작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합작법무법인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새로 합작법무법인에 가입하게 되는 합작참여자는 제35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에서 탈퇴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답변사항

- 합작법무법인의 합작참여자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합작참여자에게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 탈퇴로 합작법무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7(합작법무법인의 구성) ① 합작법무법인은 1개 이상의 국내 합작참여자와 1개 이상의 외국 합작참여자로 구성한다.

② 합작참여자는 2개 이상의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③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른 합작참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10(합작참여자의 탈퇴) ① 합작참여자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29(인가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35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합작참여자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3.2.]

8 합작법무법인 소속 직원의 겸직 관련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에서 겸직이 허용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사항

- 합작법무법인의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구성원 직을 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 외국법자문사 및 소속변호사의 경우 겸직이 제한됩니다.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③ 제35조의15제3항, 「변호사법」 제21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같은 법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22(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제한) ①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가 제35조의11제3항에 따라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하는 경우에 해당 합작참여자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였던 자는 합작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相議)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3.2.]

9 합작법무법인 고용 관련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에서 사무직원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 특별한 제한이 있는가요.

■ 답변사항

- 합작법무법인에서 사무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법률상 제한과 업무상 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률상의 제한으로는 법 제35조의14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법 제35조의26에서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자격자로 고용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4(사무직원) ① 합작법무법인은 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합작법무법인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합작법무법인”으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26(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합작법무법인은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와 동업, 업무제휴, 포괄적 협력관계의 설정, 사건의 공동 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 합작법무법인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변리사·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공인회계사·회계법인·세무사·세무법인·관세사 및 관세사법인과 조합계약, 법인설립, 지분참여, 경영권 위임을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무사사무소·법무사합동법인·변리사사무소·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공인회계사사무소·회계법인·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관세사사무소 및 관세사법인을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거나 동업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3.2.]

변호사법

제22조(사무직원)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전문개정 2008.3.28]

10 합작법무법인 운영 관련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의 수익분배는 반드시 지분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가요.

■ 답변사항

-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서 다르게 정하면 지분 비율과 다른 수익 분배가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8(수익 분배) 「변호사법」 제3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합작참여자는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수취한다.

[본조신설 2016.3.2.]

11 합작법무법인 수임제한 관련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에서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 답변사항

- 합작법무법인은 당사자로부터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은 수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은 현재 수임한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하는 경우 수임할 수 있습니다.
- 합작법무법인의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소속변호사, 소속외국법자문사 또는 소속 외국변호사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수임할 수 없습니다.
- 그 외 수임제한 관련하여 법 제35조의25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5(수임 제한)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합작참여자가 수임을 승낙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합작참여자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합작법무법인의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소속변호사, 소속외국법자문사 또는 소속 외국변호사(국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 외국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소속 외국법자문사 또는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본조신설 2016.3.2.]

12 합작법무법인 업무범위 관련

■ 문의사항

-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요.

■ 답변사항

- 합작법무법인의 국내·외국 합작참여자는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존속하는 합작참여자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대하여 변호사법 등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3(국내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 국내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과 별도로 「변호사법」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13 **합작법무법인 퇴임 변호사·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제한**

■ 문의사항

- 합작법무법인에서 사임 또는 퇴임한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는 향후 합작법무법인에서 맡았던 사건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요.

■ 답변사항

- 합작법무법인에서 사임 또는 퇴임한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는 합작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던 기간 중 합작법무법인이 수임했던 사건에 관하여는 사임 또는 퇴임 이후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관련조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2(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제한) ①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가 제35조의11제3항에 따라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하는 경우에 해당 합작참여자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였던 자는 합작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相議)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3.2.]



참 고 서 식

《붙임 1》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예비심사 신청서’ 양식 : A4 용지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예비심사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합작 법무법인 관련 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명 칭	(한 글)	
		(한 자) ※ 한자 명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영 문)	
	사무실	(1) 주사무소 주소: 전화: FAX:	
		(2) 분사무소(있는 경우) 주소: 전화: FAX:	
합작참여자 관련 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국내 합작참여자	명 칭	(한 글) (한 자) ※ 한자 명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영 문)
		변호사협회 등록번호	
		대표자	※ 공동대표자인 경우 모두 기재합니다.
		주사무소	주소: 전화: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시기:
	외국 합작참여자	명 칭	(원 어) (한 글) (영 문)
		본국 변호사협회 등록번호(있는 경우)	
		대표자	※ 공동대표자인 경우 모두 기재합니다.
		최고 의사결정 사무소	소재지: 전화: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시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합작 법무법인 대표자 관련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대표자가 변호사인 경우	성 명	(한 글)	
			(영 문)	
		주 소		
		변호사 자격취득년월일		
		변호사협회 등록번호		
	대표자가 외국법자문사인 경우 ※ 공동 대표자인 경우 모두 기재	성 명	(원 어)	
			(한 글)	
			(영 문)	
		주 소		
		자격취득국가 및 취득년월일		
본국 변호사협회 등록번호 (있는 경우)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관련		자격승인 연월일		
		자격승인번호		
	변호사협회 등록번호			

(국내 합작 참여자 명칭)과 (외국 합작참여자 명칭)은 각각 적법하게 설립되어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 8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 3에 따라 위와 같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자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내합작참여자

(서명 또는 인)

외국합작참여자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정관 2.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8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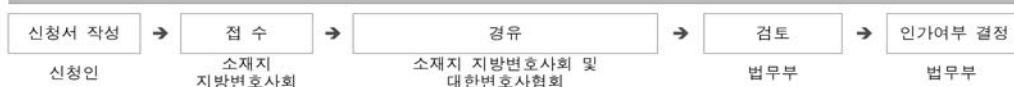
국내합작참여자

(서명 또는 인)

외국합작참여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붙임 2》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정식심사 신청서’ 양식 : A4 용지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정식심사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합작 법무법인 관련 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명 칭	(한 글)	
		(한 자) ※ 한자 명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영 문)	
	사무실	(1) 주사무소 주소: 전화: FAX:	
		(2) 분사무소(있는 경우) 주소: 전화: FAX:	
합작참여자 관련 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국내 합작참여자	명 칭	(한 글) (한 자) ※ 한자 명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영 문)
		변호사협회 등록번호	
		대표자	※ 공동대표자인 경우 모두 기재합니다.
		주사무소	주소: 전화: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시기:
	외국 합작참여자	명 칭	(원 어) (한 글) (영 문)
		본국 변호사협회 등록번호(있는 경우)	
		대표자	※ 공동대표자인 경우 모두 기재합니다.
		최고 의사결정 사무소	소재지: 전화: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시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합작 법무법인 대표자 관련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대표자가 변호사인 경우	성 명	(한 글)	
			(영 문)	
		주 소		
		변호사 자격취득년월일		
		변호사협회 등록번호		
	대표자가 외국법자문사인 경우 ※ 공동 대표자인 경우 모두 기재	성 명	(원 어)	
			(한 글)	
			(영 문)	
		주 소		
		자격취득국가 및 취득년월일		
본국 변호사협회 등록번호 (있는 경우)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관련		자격승인 연월일		
		자격승인번호		
	변호사협회 등록번호			

(국내 합작 참여자 명칭)과 (외국 합작참여자 명칭)은 각각 적법하게 설립되어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 8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 3에 따라 위와 같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자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내합작참여자

(서명 또는 인)

외국합작참여자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정관 2.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8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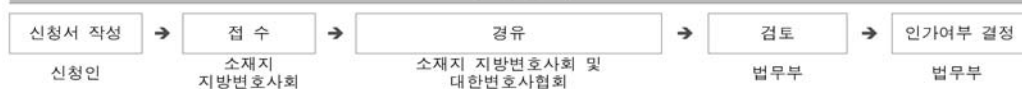
국내합작참여자

(서명 또는 인)

외국합작참여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붙임 3》 ‘설립인가 신청 합작참여자 대표의 진술서’ 양식 : A4 용지

(시행령 제10조 관련)

설립인가 신청 합작참여자 대표의 진술서

기재시 유의사항 : 한글 또는 영어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기재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어 번역을 첨부하여야 하며 번역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합작참여자 대표의 성명)은 다음 사항을 진술합니다.

이하의 진술은 작성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작성자는 질문과 답변 모두를 신중히 읽었고 작성자가 아는 내용에 관해서 진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아는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내의 정보에 근거하여 진실에 부합한다고 믿는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진술서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이 거부되거나 설립인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하 진술서 기재시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용 작성에 있어서 표를 활용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작성자의 연락처

사무소 주소 _____

사무소 전화번호 _____

Fax 번호 _____

E-mail 주소 _____

2. 귀하는 로펌의 대표자로서 귀하의 명의로 로펌을 대표하여 대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귀하가 로펌을 대표하여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최초 사무소 설립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귀하가 대표로 있는 로펌의 역사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가 대표로 있는 로펌의 최고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인 또는 사무소의 설립 일자를 반드시 포함해 주십시오)

5. 귀하가 대표로 있는 로펌에서 내부적으로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의결한 진행 절차 및 경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 상대 합작참여자와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합의 또는 결의한 진행 절차 및 경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귀하가 대표로 있는 로펌에 소속된 5년 이상 경력 변호사에 대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성명, 직위, 로펌의 구성원 여부, 변호사 경력기간, 당해 로펌 근무기간, 근무장소, 주요 업무 등)

(인원이 많은 경우 이하 표를 별첨으로 활용)

	이름	직위	로펌 구성원 (Y/N)	법조경력기간	당해 로펌 근무기간	근무장소	주요 업무
1							
2							
3							

8. 귀하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 특화되어 있는 업무 영역과 최근 5년간 수행한 업무 중 대표적인 사례 등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여 사무를 취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등)

9. (a) 귀하가 대표로 있는 로펌의 본점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에서 로펌이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_____

있다면, 다음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또는 형사처벌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징계 또는 형사처벌 사유 _____

- (b) [(a)항에서 있다고 답한 경우] 있다면, 징계 기관, 징계 또는 형사 처벌의 근거규정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또는 징계 결정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귀하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 법률사무 등 활동에 의해 손해를 받은 사건 의뢰인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시기·청구인·사안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또는 결정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향후 대한민국에 설립하려는 합작법무법인에서 근무하게 될 직원 중 귀하가 대표로 있는 로펌 출신 직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수(대표자 포함) _____ 명

소속외국법자문사의 수 _____ 명

사무직원 _____ 명 담당역할 _____

	이름	직위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일
1				
2				
3				

12. 대한민국에 설립하려는 합작법무법인에서 수행할 전문 분야 및 예상되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귀하가 설립하는 합작법무법인은 대한민국에서 합작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민사·상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타 특별한 조치를 취해둔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설립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한 이후 해당 보험관련 서류를 법무부 국제법무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준수하시겠습니까?

이상에서 진술한 것은 사실입니다.

설립인가에 관한 판단을 받을 때까지 사이에 이 진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요지를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법무부장관 귀하

성명 _____

서명 _____

____년 ____월 ____일
본인 앞에서 작성되었음을 공증함

(공증인 또는 동등 자격자 서명)

(인장 등 날인)

(본 진술서가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작성된 경우, 공증인 또는 동등 자격자의
공증 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양식 : A4 용지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수신 : 법무부장관

경유 : OO지방변호사회장, 대한변호사회회장

제목 : **(합작참여자 가입 등에 따른)** 정관변경인가 신청

당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사유가 있어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3 등에 따라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 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관변경 이유서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5. 합작참여자 가입 인가서 1부.**(정관변경 사유에 따른 입증자료)**
- (6.) 기타 정관변경 사유에 따른 입증자료**
- (7.) 최종 변경 정관 1부.**

2016. 7. .

합작법무법인 000

대표 변호사(외국법자문사) 0 0 0 (인)

업무담당자 000 (연락처)

《붙임 5》 ‘정관변경 이유서’ 양식 : A4 용지

정관변경 이유서

1. 정관변경 요지

☞ 금번 신청하는 변경내용의 요지를 기재

예시) 가. 합작참여자 변경 및 출자지분 변동 등
나. 00 분사무소 폐쇄

2. 정관변경 이유

☞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가. 법무법인 000의 탈퇴 및 법무법인 000의 합작참여자 가입
- 탈퇴자 000의 지분 000원을 가입자 000이 인수
나. 00분사무소 설립

3. 변경 조항

☞ 내용을 변경하는 ‘정관 조항’을 표시

예시) 1)정관 제0조(사무소)
2)정관 제0조(합작참여자)
3)정관 제0조(출자지분)

2016. 7. .

합작법무법인 000

대표 변호사(외국법자문사) 0 0 0 (인)

《붙임 6》 ‘정관변경 안’ 양식 : A4 용지

정관변경 안

합작법무법인 ○○○의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금번 변경하는 정관 조항의 내용을 기재

예시) 아래 기재한 내용은 분사무소의 설치, 합작참여자 가입 및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어 각 해당 조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1. 제3조(사무소)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합작법무법인은 다음의 분사무소를 둔다.

○○분사무소 : ○○시 ○○구 ○○로 706

2. 제5조(합작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국내 합작참여자 탈퇴

○○(명칭) ○○○○-○○○○(등록번호) (주사무소주소)

② 국내 합작참여자 가입

○○(명칭) ○○○○-○○○○(등록번호) (주사무소주소)

3. 제6조(출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6 조[출자] 각 합작참여자가 출자할 출자의 목적, 가액, 평가기준 및 지분은 다음과 같다.

합작참여자	목 적	가 액	평가기준	출자지분
법무법인 000 A&B LLP	금전	원		20%
	금전	원		20%

《붙임 7》 ‘신구조문 대비표’ 양식 : A4 용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합작법무법인의 주사무소는 ○○○○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합작법무법인의 주사무소는 ○○○○에 둔다. ② 이 합작법무법인은 다음의 분사무소를 둔다. ○○분사무소: ○○시 ○○구 ○○동 ○ 번지 ○○건물 ○층
제5조 (합작참여자) 합작참여자의 명칭과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다. 법무법인 000 ○○○○○○-○○○○○○○ 법무법인 A&B ○○○○○○-○○○○○○○	제5조 (합작참여자) 합작참여자의 명칭과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다. 법무법인 000 ○○○○○○-○○○○○○○ 법무법인 A&B ○○○○○○-○○○○○○○
제6조 (출자) 각 구성원이 출자할 출자의 종류, 가액, 평가기준 및 지분은 다음과 같다. 1. 법무법인 000 현금 000000원 25% 2. 법무법인 A&B 현금 000000원 25%	제6조 (출자) 각 구성원이 출자할 출자의 종류, 가액, 평가기준 및 지분은 다음과 같다. 1. 법무법인 000 현금 000000원 25% 2. 법무법인 A&B 현금 000000원 25%

《붙임 8》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갱신신청서’ 양식 : A4 용지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갱신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합작 법무법인 관련 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명 칭	(한 글)		
		(한 자)		
		※ 한자 명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영 문)			
사무실	(1) 주사무소			
	주소:			
	전화:		FAX:	
	(2) 분사무소(있는 경우)			
주소:				
전화:		FAX:		
합작참여자 관련 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국내 합작참여자	명 칭	(한 글)	
			(한 자)	
			※ 한자 명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영 문)	
	변호사협회 등록번호			
		대표자		
			※ 공동대표자인 경우 모두 기재합니다.	
			주사무소	주소:
	전화: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시기:			
외국 합작참여자	명 칭	(원 어)		
		(한 글)		
		(영 문)		
	본국 변호사협회 등록번호(있는 경우)			
	대표자			
		※ 공동대표자인 경우 모두 기재합니다.		
최고 의사결정 사무소	소재지:			
	전화: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시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합작 법무법인 대표자 관련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대표자가 변호사인 경우	성 명	(한 글)	
			(영 문)	
		주 소		
		변호사 자격취득년월일		
		변호사협회 등록번호		
	대표자가 외국법자문사 인 경우 ※ 공동 대표자인 경우 모두 기재	성 명	(원 어)	
			(한 글)	
			(영 문)	
		주 소		
		자격취득국가 및 취득년월일		
본국 변호사협회 등록번호 (있는 경우)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관련		자격승인 연월일		
		자격승인번호		
	변호사협회 등록번호			

(합작법무법인 명칭)은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를 갱신하고자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합작법무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8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2. 그 밖의 참고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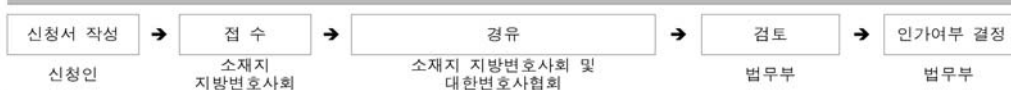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작법무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IV

참 고 법 령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2016.7.1.] [법률 제14056호, 2016.3.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

1. “변호사”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2. “외국변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란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5.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외국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후 법률사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국가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국가의 법령 등에 관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가를 말한다. 다만, 어느 국가 내에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이 부여되는 여러 개의 도(道)·주(州)·성(省)·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지역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6. “외국법사무”란 원자격국의 법령(원자격국에서 효력을 가지거나 가졌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 등 제24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가 수행

하도록 허용된 업무를 말한다.

7. “국제중재사건”이란 대한민국을 중재지로 하고, 대한민국 외 국가의 법령,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 대한민국 외 국가 간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민사·상사의 중재사건을 말한다.
8. “자유무역협정등”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기구와 외국법사무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교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
9. “합작법무법인”이란 외국법사무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법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0. “국내 합작참여자”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말한다.
11. “외국 합작참여자”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를 말한다.
12. “합작참여자”란 국내 합작참여자 및 외국 합작참여자를 말한다.

제2장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제3조(자격승인의 신청) ①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1.4.5.>

제4조(직무 경력) ①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외국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신청인이 원자격국 외의 외국에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 사무를 수행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대한민국에서 고용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대하여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조사·연구·보고 등의 사무를 근로자인 자기의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 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법자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6.>

1.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가를 불문하고 공직에서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같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6.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및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

제6조(자격승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할 수 있다.

1.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일 것
 2. 원자격국 내에서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유효할 것
 3. 제4조에 따른 직무 경력이 있을 것
 4.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5. 대한민국 내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를 가지고 있을 것
 6. 제3조제2항의 경우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것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자격승인을 하면서 신청인이 외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자격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국가에서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자격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자격승인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제5조의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격승인신청서 또는 그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업무능력이나 재산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4. 자격승인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고시 등) ① 법무부장관은 자격승인 또는 자격승인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대상자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자격승인 및 그 취소는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있다.

제9조(보고 등) ①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나 외국법자문사에게 자격승인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자격승인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제3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제10조(등록의 신청) ①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 수행을 개시하려는 사람은 제6조의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서면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원자격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증명서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법자문사 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2항의 원자격국을 외국법자문사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명부에 등록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③ 등록의 갱신신청은 제2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신청 및 등록의 갱신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12조(등록거부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심신장애(心神障礙)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에 따라 자격승인이 취소된 경우
 4.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이 거부되거나 제13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②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이 거부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명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없거나 자격승인이 취소된 경우
3.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다만,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록취소를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외국법자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는 경우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4조, 제25조 및 제34조를 위반하거나,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3조 및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해당 외국법자문사(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외국법자문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명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등록거부 시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조(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12조에 따른 등록거부 또는 등록의 갱신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 ②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15조(설립신청 등) ① 원자격국에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무소나 법인(이하 “본점사무소”라 한다)에 소속된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외국법자문사는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
-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1.4.5.>

제16조(설립인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 본점사무소가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2. 본점사무소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표사무소로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4. 본점사무소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한 민사·상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할 것
- ② 여러 나라에 걸쳐 사무소, 현지 사무소, 현지 법인, 지사, 분사무소 등 법률

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를 본점사무소로 본다.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결원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7조(고시 등)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15조제2항의 신청인과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는 제1항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있다.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①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에 관한 사항
4. 설립인가 연월일
5. 본점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
2. 제16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서면
3. 제2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4. 제34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34조의4에 따른 취소에 관한 서면
- ⑥ 대한변호사협회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 ⑦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개정 2011.4.5.>

제19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4.5.>

1.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그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5. 법무부장관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공익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7.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8.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법무부장관은 본점사무소가 제35조의2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당 본점사무소가 제15조에 따라 설립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③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사유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⑤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3.2.>

제20조(사무직원)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 본다.

제21조(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외국법사무의 수행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에 밝혀야 한다.

제22조(장부의 작성 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장부의 기재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집행 방법 및 그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50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항 본문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법무법인”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본다.

-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

제24조(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2.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제24조의2(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 ①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4조제3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외국변호사는 제24조제3호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1년에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간호·문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은 체류 기간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25조(업무수행의 방식) ①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
3.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소속 외국법자문사
4. 합작법무법인의 선임외국법자문사(제35조의11제1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합작법무법인의 선임외국법자문사 아닌 소속외국법자문사

② 외국법자문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합작법무법인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6.3.2.>

제26조(신고 등) ① 외국법자문사가 업무를 개시한 경우, 일시 휴업한 경우 또는 근무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자격의 표시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원자격국이 도·주·성·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 그 국가의 명칭을 위 원자격국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어 “법자문사”를 덧붙인 직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명과 함께 괄호 안에 원자격국언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을 포함한 해당 외국변호사의 명칭을 부기할 수 있고, 이어 국어로 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본점사무소의 명칭 다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지역명을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③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방식 외의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소 안팎의 적절한 장소에 구성원, 소속 외국법자문사 및 그 원자격국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⑤ 합작법무법인은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소 안팎의 적절한 장소에 전체 합작참여자, 선임변호사, 소속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및 소속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원자격국을 포함한다)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⑥ 외국법자문사 또는 합작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외국법사무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그 원자격국(합작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담당외국법자문사의 원자격국을 말한다)과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⑦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사람은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명칭이나 표시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3.2.>

제28조(윤리기준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倫理章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체류 의무) ① 외국법자문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사가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간호·문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 그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본다.

제30조(비밀유지 의무)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광고) ①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합작법무법인의 경우에는 합작참여자,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의 원자격국, 학력, 경력, 전문분야,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신문·잡지·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② 제1항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

문사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외국법자문사의 광고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 또는 “변호사등”은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6.3.2.>

제32조(법무부장관의 감독 등) ①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은 그 활동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3.2.>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제33조(자료 제출의 의무)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은 법무부장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2조제1항의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유를 명시하여 그 업무·재산의 현황, 수입·회계 내역의 명세,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

제34조(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①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와 동업, 업무제휴, 포괄적 협력관계의 설정,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변리사·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공인회계사·회계법인·세무사·세무법인·관세사 및 관세사법인과 조합계약, 법인설립, 지분참여, 경영권 위임을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사무소·법무

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변리사사무소·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공인회계사사무소·회계법인·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관세사사무소 및 관세사법인을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거나 동업할 수 없다. <개정 2013.7.30., 2016.2.3.>

제34조의2(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 ① 자유무역협정등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 본점사무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34조의3에 따른 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이하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이라 한다)을 한 경우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소속 변호사가 처리하는 법률사무에 대하여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4.5.]

제34조의3(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①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은 공동 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 및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1.4.5.]

제34조의4(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본점사무소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등록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명령이 있거나 등록취소명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해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4.5.]

제34조의5(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①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그 상대방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명칭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 계약체결일, 그 밖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1.4.5.]

제35조(「변호사법」의 준용) 외국법자문사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법률사무소”는 “외국

법자문법률사무소”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개정 2016.3.2.>

제5장의2 합작법무법인 <신설 2016.3.2.>

제35조의2(설립) ①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와 합작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외국 합작참여자가 여러 나라에 걸쳐 사무소, 현지 사무소, 현지 법인, 지사, 분사무소 등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 소재지 국가를 기준으로 제1항의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을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3(설립 신청 등) ①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합작참여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또는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합작참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유효기간은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설립인가의 갱신 신청은 제3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0개월 전부터 5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4(정관 기재 사항)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 기준 및 지분 비율
 4. 합작참여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합작참여자 회의에 관한 사항
 6.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제35조의11제1항의 요건을 갖춘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
 7.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8. 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5(등기) ①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4.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
5. 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합작법무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6(명칭) ① 합작법무법인은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통용되는 약칭을 포함한다)을 병기하고, 그 명칭 중에 합작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합작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합작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7(합작법무법인의 구성) ① 합작법무법인은 1개 이상의 국내 합작참여자와 1개 이상의 외국 합작참여자로 구성한다.

② 합작참여자는 2개 이상의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③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른 합작참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8(합작참여자) ①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국내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2.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5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이들 중 최소 3명은 해당 국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3. 주사무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되었을 것
 - 가. 최근 5년간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최근 5년간 그 대표가 국내 합작참여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를 받은 경우로서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국내 합작참여자의 인적 구성, 업무사례,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합작법무법인 사무 취급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외국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2.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5명 이상의 외국변호사를 보유하고, 이들 중 최소 3명은 해당 외국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3. 제35조의2제2항의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되었을 것

가. 최근 5년간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최근 5년간 그 대표가 외국 합작참여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 없을 것. 다만,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외국 합작참여자의 인적 구성, 업무사례,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합작법무법인 사무 취급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본조신설 2016.3.2.]

- 제35조의9(합작참여자의 가입)** ① 합작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합작법무법인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새로 합작법무법인에 가입하게 되는 합작참여자는 제35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 제35조의10(합작참여자의 탈퇴)** ① 합작참여자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 ② 국내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해산한 경우
2. 「변호사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3.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외국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법에 따라 해산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6.3.2.]

- 제35조의11(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① 「변호사법」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각 2명 이상의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둔다.

1.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2.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거나,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2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3.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일 것
 - ②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외국법자문사 수는 선임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다.
 - ③ 제35조의15제3항, 「변호사법」 제21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같은 법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할 수 있다.
 - ④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 인원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12(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 ① 「변호사법」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은 선임변호사 아닌 소속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아닌 소속외국법자문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이어야 한다.
- ③ 합작법무법인 내 소속외국법자문사 수는 소속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다.
- ④ 합작법무법인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13(대표) 합작법무법인의 대표는 합작참여자 회의(합작참여자를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된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일 것
2. 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 합작참여자의 소재지국일 것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14(사무직원) ① 합작법무법인은 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합작법무법인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합작법무법인”으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15(사무소) ① 합작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② 합작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합작법무법인 내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는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합작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16(지분) ① 외국 합작참여자는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 ② 합작법무법인 내에 복수의 외국 합작참여자가 있을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 ③ 합작참여자는 다른 모든 합작참여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17(의결권 행사) ① 합작참여자는 합작참여자 회의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합작참여자의 회의는 총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18(수익 분배) 「변호사법」 제3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합작참여자는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수취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19(업무 범위) 합작법무법인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의 사법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작성
2. 「공증인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증서 작성의 촉탁 대리
3. 노동 분야 자문
4.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기관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5.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친족·상속 관계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20(업무 집행 방법)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외국법자문사(이하 “담당외국법자문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소속변호사 또는 소속외국법자문사에 대해서는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외국법자문사는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외국법자문사로 지정될 수 없다.
- ③ 합작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④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모두를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선임변호사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 ⑤ 합작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⑥ 합작법무법인이 제5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 ⑦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⑧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한다.
- ⑨ 합작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21(부당 관여 금지) 합작법무법인 내 외국법자문사는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때 합작법무법인 내 변호사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리거나 부당한 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22(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제한) ①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가 제35조의11제3항에 따라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하는 경우에 해당 합작참여자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였던 자는 합작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相議)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23(국내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 국내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과 별도로 「변호사법」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24(장부의 작성·보관) 합작법무법인은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장부의 기재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25(수임 제한)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합작참여자가 수임을 승낙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합작참여자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합작법무법인의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소속변호사, 소속외국법자문사 또는 소속 외국변호사(국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

외국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소속 외국법자문사 또는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다)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26(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무사·변리사·공인 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합작법무법인은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와 동업, 업무 제휴, 포괄적 협력관계의 설정, 사건의 공동 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 합작법무법인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무사 합동법인·변리사·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공인회계사·회계법인·세무사·세무법인·관세사 및 관세사법인과 조합계약, 법인설립, 지분참여, 경영권 위임을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무사사무소·법무사합동법인·변리사사무소·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공인회계사사무소·회계법인·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관세사사무소 및 관세사법인을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거나 동업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27(보고 등) ①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8에 관한 사항
2. 제35조의11부터 제35조의13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제35조의16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에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설립인가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28(손해배상책임) ①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하는 자(담당변호사 및 담당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합작법무법인은 그 대표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합작법무법인은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처리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합작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계약서와 광고물에 밝히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29(인가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그 증명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합작참여자가 제3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경우
3. 제35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합작참여자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4. 합작참여자가 제35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30(해산) ①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파산하였을 때
4.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5. 인가 유효기간 만료 후 인가 갱신을 받지 못한 때

② 합작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31(인가 등 통지)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의 인가, 인가 취소 및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32(준용 규정)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제6장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35조의33(다른 법률의 준용) ① 합작법무법인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7조, 제28조의2,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합작법무법인”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② 합작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173조, 제230조, 제232조부터 제240조까지 및 제242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3.2.]

제6장 징계

제36조(징계의 종류)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승인취소
2. 등록취소
3. 3년 이하의 정직(停職)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37조(징계 사유) ① 제36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6조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6조제3호에 따른 정직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외국법자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8조(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법자문사의 징계는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가 행한다.

②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제39조(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인 위원을 추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갈음하여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및 외국법자문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및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 교수 1명
-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과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여야 한다.
-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40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7명을 둔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며, 위원과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인 위원을 위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2. 검사 중에서 각 2명
3. 외국법자문사 중에서 각 1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
5.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과대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각 1명

- ③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④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1.6.>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징계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

제41조(징계위원회의 권한)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건과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제42조(징계개시의 청구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외국법자문사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외국법자문사에게 제37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외국법자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에 대하여 징계개시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⑤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97조의5를 준용한다.

제43조(징계의 결정 기간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97조의5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계위원회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44조(징계의 집행·절차 등) ① 제36조제1호에 따른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집행하고, 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② 제36조제4호에 따른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고,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 외국법자문사의 징계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4제2항·제3항, 제98조의5제3항·제4항, 제99조, 제100조 및 제101조의2를 준용한다.

제45조(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공소(公訴)가 제기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자격승인취소 또는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계위원회에 그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03조부터 제1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본다.

제7장 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 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외국법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사람.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는 제외한다.
2. 제35조 및 제35조의33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사람
3.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외국법자문사. 다만, 외국법자문사가 제24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

신청 사건

-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사건
- 마.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6.3.2.>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외국법자문사
2. 제3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및 그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사용한 사람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호사를 고용한 사람
4.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및 변호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자문사
 - 가. 외국의 법원 또는 행정기관을 위하여 행하는 문서의 송달과 증거조사를 행한 사람
 - 나.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기관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를 대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문서의 작성을 행한 사람
6. 제35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및 변호사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 법무부장관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또는 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신청을 하여 자격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변호사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한 사람
4.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
5. 제35조 및 제35조의3제1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한 사람
6.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
7.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신청을 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람
8. 제3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사람
9. 제35조의26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한 사람
10. 제35조의26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 제3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
3. 제35조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거나, 제35조의25제3호를 위반한 사람
4. 제35조의26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
5. 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사람

제50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1조(외국인의 국외범) 제47조제2호는 대한민국 외에서 죄를 지은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訴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몰수 또는 추징)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
2. 제21조 또는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와 그 사용자
4.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합작법무법인
5. 제29조를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6. 제35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합작법무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4.5., 2016.3.2.>

1. 제22조를 위반하거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 1의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체류한 사람
2. 제33조를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

짓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합작법무법인

3.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4. 「공증인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증서 작성의 촉탁을 대리한 외국법자문사
 5.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수임사건의 건수 또는 수임액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
 6. 제35조의1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거나, 제35조의24를 위반한 합작법무법인
 7. 제35조의30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8. 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수임사건의 건수 또는 수임액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사건 유치 목적으로 출입·주재하거나 또는 같은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한 사람 또는 합작법무법인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에 대한 불복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

부 칙 <법률 제9524호, 2009.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0542호, 2011.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승인 신청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격승인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립신청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 취지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0629호, 2011.5.19.> (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호나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법률 제11962호, 2013.7.30.> (변리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부 칙<법률 제13715호, 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법률 제14056호, 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3호 중 “법률사무소”를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1호 중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

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89조의4제2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로 한다.

제89조의5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한다.

제89조의6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61호, 2016.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승인의 신청)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이하 “자격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이력서
3. 법 제6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6.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등을 적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진술서
7. 그 밖의 참고 서류

제3조(서약 내용의 확인)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제2조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직원 앞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읽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 경력에의 산입)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의 직무 경력에 산입할 수 있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사무 등의 수행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에서의 법률사무 수행 기간: 3년까지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업무수행 기간: 2년까지

제5조(예비심사) 자격승인을 신청하려는 외국변호사는 신청 전에 자격승인 신청서와 그 증빙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을 신청할 때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7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의 참고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법 제17조제1항의 설립인가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1조에 따라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구성원이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연간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을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총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총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수입 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이나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35조의8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의 참고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하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합작법무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선임변호사(법 제35조의1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선임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5. 합작참여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의31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합작참여자는 신청 전에 합작법무

법인 설립인가신청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8.]

제11조(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① 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합작참여자는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는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로, “설립인가”는 “정관변경 인가”로 본다.

[본조신설 2016.6.28.]

제12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 ①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 갱신신청서에 제10조제1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갱신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8.]

제13조(합작법무법인의 등기) ① 합작법무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② 합작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합작참여자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

③ 합작법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④ 합작법무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7일 이내에 합작법무법인 설립등기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8.]

제14조(경미한 사유) ① 법 제35조의8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 합작참여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나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

가. 1년 이하의 징역에 상당하는 징계

나. 과태료

다. 견책

2. 제1호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② 법 제35조의8제1항제4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 합작참여자의 대표가 「변호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을 것

가. 1년 이하의 정직

나. 과태료

다. 견책

2. 제1호에 따른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③ 법 제35조의8제2항제4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 합작참여자가 「변호사법」(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징계나 형사처벌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것

가. 1년 이하의 정직

나. 과태료

다. 견책

2. 제1호에 따른 징계 또는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④ 법 제35조의8제2항제4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 합작참여자의 대표가 「변호사법」(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징계나 금고 이상의 형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것

가. 1년 이하의 정직

나. 과태료

다. 견책

2. 제1호에 따른 징계 또는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

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본조신설 2016.6.28.]

제15조(주사무소와 분사무소) ① 법 제35조의15제1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주사무소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가 각각 그 총 인원의 3분의 1 이상 주재(駐在)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가 각각 1명 이상 주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의15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를 신고할 때에는 그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분사무소는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다.

④ 분사무소에는 합작법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8.]

제16조(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 제35조의28제2항에 따라 법 제35조의5제1항의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연간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을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법 제35조의12제1항에 따른 소속변호사(이하 “소속변호사”라 한다) 및 같은 항에 따른 소속외국법자문사(이하 “소속외국법자문사”라 한다)의 총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합작법무법인은 제3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8.]

제17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본조신설 2016.6.28.]

부 칙 <대통령령 제21661호, 2009.8.5.>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261호,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을 각각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②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사목 중 “법률사무소”를 각각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실무 매뉴얼

발 행 일 : 2016년 8월 일 인쇄
2016년 8월 일 발행

발 행 처 :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

기획·편집 : 구상엽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노선균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신은영 법무부 국제법무과 사무관
고영노 법무부 국제법무과 전문위원
김민수 법무부 국제법무과 법무관
유현욱 법무부 국제법무과 법무관

주 소 :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전화 (02) 2110-3661
팩스 (02) 2110-0327

인 쇄 처 : 성진사 (031) 388-4485